

국가형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안내

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·의료비·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1 신청 사유

- ①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④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⑤ 화재, 철거, 경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- ⑥ 갑작스러운 주소득자의 실직, 휴·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- ⑦ 실직 등의 사유로 임차료(월세)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퇴거위기에 처한 경우 등

2 지원기준 및 내용

구 분	국가형 긴급복지	서울형 긴급복지
지원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 : 기준중위소득 75%이하 • 재산 : 135백만원 이하(금융재산 500만원 이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 : 기준중위소득 85%이하 • 재산 : 189백만원 이하(금융재산 1,000만원 이하)
지원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※ 의료비, 주거비는 가구원수 상관없이 100만원까지 지원
신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구청 복지지원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 주민센터
구비 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신청서(현장확인서, 소득재산신고서, 금융정보 제공동의서, 긴급지원신청 사실확인서 등) ③ 임대차계약서 1부 ④ 제증명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 ⑤ 기타 증빙서류(통장거래내역 6개월치, 휴·폐업 증명서, 퇴직증명서, 진단서 등)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사례회의 결과서 1부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③ 금융정보제공동의서 1부. ④ 임대차계약서 1부 ⑤ 제증명(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 ⑥ 기타 증빙서류(통장거래내역 6개월치, 휴·폐업 증명서, 퇴직증명서, 진단서 등)

※ 문 의 : 중구청 복지지원과(☎3396-5316) 및 소공동주민센터(☎3396-6512), 보건복지콜센터 ☎129(국번없이)